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호	1143
-----------	------

2016년 9월 2일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16. 4. 20 우미경 의원 발의(찬성자 10명)(2016. 4. 22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교량”을 “다리”로 하고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 “매 5년마다”를 “5년마다”로 하고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로 하고 “그러지 아니하다”를 “제외한다”로 함.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2조, 제16조, 제21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경관법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. 다만, ‘교량’을 ‘다리’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도로법」 등 관련 법령과의 용어 통일성과 시민의 이해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행 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¹⁾.
- 참고로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,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,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, 명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,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임.

1)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도 불구하고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“도로시설물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”라고 정의되어 있으며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“제1종 시설물이란 교량·터널·항만·댐·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시설물을 말한다”라고 정의되어 있음.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교량”을 “다리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며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매 5년마다”를 “5년마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8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4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4호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고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제외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경관계획의 내용) 1~2. (생략) 3. 교량,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 에 관한 사항	제7조(경관계획의 내용) 1~2. (현행과 같음) 3. <u>다리</u> , ----- -----
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 는 위촉할 수 있다. 1.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.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.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 한 경험이 있는 자 ②~③ (생략) ④ 공청회의 주재자·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① ----- ----- ----- 1. <u>해당</u> ----- 2. <u>해당</u> ----- ----- 3. <u>해당</u> ----- ----- ②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<u>범위</u> <u>에서</u> ----- ----- -----
제9조(경관사업의 대상) ① (생략)	제9조(경관사업의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
<p>② 제1항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<u>매 5년마다</u>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·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<u>5년마다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~⑦ (생략)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	<p>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~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경관협정의 내용) 1~3. (생략) 4. <u>당해</u>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</p>	<p>제16조(경관협정의 내용) 1~3. (현행과 같음) 4.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
<p>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~② (생략) ③ 시장은 <u>당해</u>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~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~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·연구</p>	<p>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~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~3. (생략) 4.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, 경관사업 시행자, 협정체결자,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 1~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인정할 때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7조(수당 등)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</u> 아니하다.</p>	<p>제27조(수당 등)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한다.</u></p>